|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1994년 1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2호 발표, 2005년 12월 1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제1차 수정, 2008년 2월 18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제2차 수정, 2011년 7월 1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제3차 수정, 2018년 12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07호 제4차 수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개인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개인소득세법에서 지칭하는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다는 것은 호적, 가정, 경제이익관계로 인해 중국 경내에서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경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각각 중국 경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과 중국 경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제3조 국무원 재정 및 세무 주관 부문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에서 열거하는 소득은 지급 지역이 중국 경내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중국 경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이다.  3.1 임직, 고용, 계약이행 등 중국 경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  3.2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재산이 중국 경내에서 사용되어 취득한 소득  3.3 각종 특허권을 중국 경내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취득한 소득  3.4 중국 경내의 부동산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중국 경내의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  3.5 중국 경내기업, 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거주자 개인에게서 취득하는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  제4조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고, 중국 경내에서의 누계거주기간이 만183일인 연도가 연속하여 만6년이 되지 않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備案)하여 중국 경외에 원천이 있고 동시에 경외단위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한다. 중국 경내에서의 누계거주기간이 만183일인 어느 연도에서의 1회 출경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중국 경내에서의 누계거주기간이 만183일인 연도의 연속 연한으로 다시 기산 한다.  제5조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고, 1개 납세연도 중 중국 경내에서의 누계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국 경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은 경외 고용주가 지급하고 동시에 해당 고용주의 중국 경내 기구, 장소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한다.  제6조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각 항목별 개인소득의 범위:  6.1 임금 및 급여 소득은 개인이 임직 또는 고용으로 취득한 임금, 급여, 상여금, 연말추가상여금, 근로분배이익, 보조금, 수당 및 임직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소득을 의미한다.  6.2 용역보수 소득은 개인이 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하며 설계, 장식, 설치, 제도, 화학실험, 측정, 의료, 법률, 회계, 자문, 강의, 번역, 원고심사, 서화, 조각, 영화, 녹음, 녹화, 연출, 연기, 광고, 전시, 기술서비스, 소개서비스, 중개서비스, 대리서비스 및 기타 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을 포함한다.  6.3 원고료 소득은 개인이 작품을 도서, 간행물 등 형식으로 출판, 발표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6.4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개인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 및 기타 특허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저작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은 원고료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5 경영 소득을 다음을 의미한다.  6.5.1 개체공상호가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 동업기업의 개인동업인이 경내에 등록된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의 생산, 경영에 원천을 두고 취득한 소득  6.5.2 개인이 합법적으로 교육, 의료, 자문 및 기타 유상서비스 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6.5.3 개인이 기업, 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 및 하청, 재임대를 통해 취득한 소득  6.5.4 개인이 기타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6.6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은 개인이 채권, 지분권 등을 보유하여 취득한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을 의미한다.  6.7 재산임대 소득은 개인이 부동산, 기계설비, 차량선박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6.8 재산양도 소득은 개인이 유가증권, 지분권, 동업기업 중의 재산점유분, 부동산, 기계설비, 차량선박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6.9 우발 소득은 개인이 수상, 당첨, 복권 당첨 및 기타 우발적 성격의 소득을 의미한다.  개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소득항목 판정이 어려운 경우, 국무원 주관 부문에서 확정한다.  제7조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제8조 개인소득 형식에는 현금, 실물, 유가증권 및 기타 형식의 경제이익이 포함된다. 소득이 실물인 경우 취득 증빙에 명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증빙이 없는 실물 또는 증빙에 명시된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소득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소득이 기타 형식의 경제이익인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제9조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관 제2항의 국채이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취득한 이자를 의미한다.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 이자는 개인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발행된 금융채권을 보유하여 취득한 이자를 의미한다.  제10조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관 제3항의 국가의 통일 규정에 따라 발급된 보조금, 수당은 국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된 정부 특수수당, 원사(院士)수당 및 국무원이 개인소득세 납부 면제를 규정한 기타의 보조금, 수당을 의미한다.  제11조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관 제4항의 복리비는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조직이 공제하여 유보한 복리비 또는 공회경비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을 의미한다. 구제금이란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계곤란 보조비를 의미한다.  제12조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관 제8항의 유관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가 허용되는 각국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인원의 소득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 및 면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 및 면제조례>에서 면세로 정한 소득을 의미한다.  제13조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관 제1항의 법에 의거하여 확정되는 기타공제에는 개인이 납부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연금, 직업연금, 개인이 구매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성 건강보험, 세수거치형 상업 양로보험의 지출과 국무원이 공제를 허용한 기타 항목이 포함된다.  특정 항목 공제, 특정 항목 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되는 기타 공제는 거주자 개인의 1개 납세연도 과세소득액을 한도액으로 하며, 1개 납세연도 공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제14조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관 제2항, 제4항, 제6항의 매회는 각각 아래에서 열거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14.1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의 일회성 수입은 해당 수입의 취득이 매회 수입이다.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연속성 수입은 1개월 내에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이다.  14.2 재산임대 소득은 1개월 내에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이다.  14.3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은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의 지급 시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이다.  14.4 우발 소득은 매회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이다.  제15조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관 제3항의 원가, 비용은 생산, 경영 활동 중 발생한 각종 직접적인 지출과 원가로 분배 계상된 간접비용 및 영업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을 의미한다. 손실은 생산, 경영 활동 중에 발생한 고정자산, 재고의 실사 손실, 훼손 손실, 폐기 손실, 재산양도 손실, 대손 손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기타 손실을 의미한다.  경영 소득을 취득한 개인이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매 1개 납세연도의 과세소득액 계산시에 비용 6만 위안, 특정 항목 공제, 특정 항목 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되는 기타 공제를 감하여야 한다. 특정 항목 부가공제는 연말정산을 처리할 때 감액한다.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으나 완전하고 정확한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과세소득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과세소득액 또는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제16조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관 제5항에서 정한 재산원가는 아래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16.1 유가증권: 매입가격 및 매입 시 규정에 따라 납부한 유관 비용  16.2 건축물: 건축비 또는 구매가격과 기타 유관 비용  16.3 토지사용권: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 토지개발 비용 및 기타 유관 비용  16.4 기계설비, 차량선박: 구매가격, 운임, 설치비 및 기타 유관 비용  기타 재산은 전항에서 정한 방법을 참고하여 재산원가를 확정한다.  납세자가 완전하고 정확한 재산원가 증빙을 제공하지 않아 본 조 제1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산원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서 재산원가를 산정한다.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관 제5항의 합리적 비용은 재산 매각시에 규정에 따라 지급한 유관 세금과 비용을 의미한다.  제17조 재산양도 소득은 매회 재산양도 수입액에서 재산원가와 합리적 비용을 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세한다.  제18조 2인 이상의 개인이 동일 프로젝트 수입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매 1인이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 각각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세한다.  제19조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3관의 개인이 소득을 교육, 빈곤구제, 빈민지원 등 공익자선사업에 대한 기부는 개인이 소득을 중국 경내의 공익성 사회조직,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 빈곤구제, 빈민지원 등 공익자선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소득액은 기부액을 계산하여 공제하기 전의 과세소득액을 의미한다.  제20조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내 및 경외에서 취득한 종합 소득, 경영 소득은 각각 합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중국 경내 및 경외에서 취득한 기타 소득은 구분하여 단독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인소득세법 제7조의 경외에서 기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은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원천국가(지역)의 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동시에 실제로 기납부한 소득세 세액을 의미한다.  개인소득세법 제7조의 납세자 경외 소득에 대한 본 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은 거주자 개인이 경외에서 기납부한 종합 소득, 경영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한도액이다(이하 ‘이중과세방지 한도액’).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문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경외의 1개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종합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한도액, 경영 소득 이중과세방지 한도액 및 기타 소득의 이중과세방지 한도액의 총합이 해당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한도액이다.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의 1개 국가(지역)에서 실제로 기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이 전관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 중국에서 차액부문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단, 이후 납세연도에 해당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소득의 이중과세방지 한도액 잔액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추가 공제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거주가 개인이 경외에서 기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을 공제 신청할 경우, 경외세무기관이 발급한 세금 귀속연도의 유관 납세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인소득세법 제8조 제2관에서 규정한 이자는 세금 귀속 납세 신고기간 마지막일 중국인민은행에서 공시한 것과 추가 납부기간 동기(同期)의 인민폐 대출 기준이율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세금 납세 신고기간 만 회차 다음날부터 추가 납부세금 기한 만료일까지 일일 추가 징수한다. 납세자가 추가 세금 납부기간 만료 전 세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이자 추가 징수는 추가 세금 납부일까지 이다.  제24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과세항목을 지급할 경우,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예비 공제 또는 원천징수 하고, 적시에 국고에 납부하며 또한 특정 항목은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관의 지급이란 현금 지급, 어음 지급, 계좌이체 지급과 유가증권, 실물 및 기타 형식의 지급을 포함한다.  제25조 종합 소득을 취득하여 연말정산 처리가 필요한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25.1 2곳 이상에서 취득한 종합 소득, 동시에 종합 소득 연수입액에서 특정 항목 공제를 감한 잔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25.2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중 1개 또는 다수 소득, 동시에 종합 소득 연수입액에서 특정 항목 공제를 감한 잔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25.3 납세연도 내 선납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25.4 납세자가 퇴세(번역자 주: 세금 환급)를 신청한 경우  납세자가 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국 경내에서 개설한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또한 연말정산 현지 지역에서 세금 국고 환급을 처리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주관 부문이 제정한다.  제26조 개인소득세법 제10조 제2관의 전체 인원 모든 금액 원천징수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다음달 15일 내 주관 세무기관에 소득을 지급한 모든 개인의 유관 정보, 지급 소득금액, 공제 사항과 금액, 원천징수세액의 구체적 금액과 총액 및 기타 세무 관련 정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7조 납세자가 납세 신고를 처리하는 장소 및 기타 유관 사항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제28조 거주자 개인이 임금 및 급여 소득을 취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특정 항목 부가공제 유관 정보를 제공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시에 특정 항목 부가공제를 감할 수 있다. 납세자가 동시에 2곳 이상에서 임금 및 급여 소득을 취득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특정 항목 부가공제를 감할 경우, 동일한 특정 항목 부가공제에 대해서는 1개 납세연도 내 오직 1곳에서 취득한 소득에서 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및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연말정산 시 세무기관에 유관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항목 부가공제를 감하여야 한다.  제29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기타단위와 개인에게 위탁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에 맞춰 원천징수 신고를 계산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공하거나 원천징수 신고한 개인정보, 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이 실제상황과 맞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을 거절할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에 따라 특정 항목 부가공제와 관련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특정 항목 부가공제 정보에 대해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세무 주관부문에서 별도 규정한다.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제공한 허위 정보를 발견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유관 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시스템에 올리고 동시에 공동 징계를 실시한다.  제31조 납세자가 퇴세 신청 시에 제공한 연말정산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수정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수정한 경우, 세무기관은 적시에 퇴세를 처리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퇴세 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유관 자료에 근거하여 퇴세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득이 인민폐 이외의 화폐인 경우,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 신고를 처리한 전월 마지막일 인민폐 환율 중간 값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연도 종료 후 연말정산을 처리할 경우, 이미 월별, 분기별 또는 회차별 선납세액에 대한 인민폐 이외의 화폐 소득에 대해서는 재차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소득 부분은 이전 납세연도 마지막일 인민폐 환율 중간 값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제33조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속비를 지급할 경우 반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반환서를 근거로 국고관리 유관 규정에 따라 국고 환급 수속을 처리한다.  제34조 개인소득세 납세 신고표 및 원천징수 개인소득세 보고표와 개인소득세 완납증명 양식은 국무원 세무 주관부문이 통일시켜 제정한다.  제35조 군대 인원 개인소득세 징수 사안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6조 본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1994年1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42号发布；根据2005年12月19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根据2008年2月18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根据2011年7月19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的决定》第三次修订；2018年12月1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07号第四次修订）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以下简称个人所得税法），制定本条例。  第二条　个人所得税法所称在中国境内有住所，是指因户籍、家庭、经济利益关系而在中国境内习惯性居住；所称从中国境内和境外取得的所得，分别是指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和来源于中国境外的所得。  第三条　除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外，下列所得，不论支付地点是否在中国境内，均为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  （一）因任职、受雇、履约等在中国境内提供劳务取得的所得；  （二）将财产出租给承租人在中国境内使用而取得的所得；  （三）许可各种特许权在中国境内使用而取得的所得；  （四）转让中国境内的不动产等财产或者在中国境内转让其他财产取得的所得；  （五）从中国境内企业、事业单位、其他组织以及居民个人取得的利息、股息、红利所得。  第四条　在中国境内无住所的个人，在中国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年度连续不满六年的，经向主管税务机关备案，其来源于中国境外且由境外单位或者个人支付的所得，免予缴纳个人所得税;在中国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任一年度中有一次离境超过30天的，其在中国境内居住累计满183天的年度的连续年限重新起算。  第五条　在中国境内无住所的个人，在一个纳税年度内在中国境内居住累计不超过90天的，其来源于中国境内的所得，由境外雇主支付并且不由该雇主在中国境内的机构、场所负担的部分，免予缴纳个人所得税。  第六条　个人所得税法规定的各项个人所得的范围：  （一）工资、薪金所得，是指个人因任职或者受雇取得的工资、薪金、奖金、年终加薪、劳动分红、津贴、补贴以及与任职或者受雇有关的其他所得。  （二）劳务报酬所得，是指个人从事劳务取得的所得，包括从事设计、装潢、安装、制图、化验、测试、医疗、法律、会计、咨询、讲学、翻译、审稿、书画、雕刻、影视、录音、录像、演出、表演、广告、展览、技术服务、介绍服务、经纪服务、代办服务以及其他劳务取得的所得。  （三）稿酬所得，是指个人因其作品以图书、报刊等形式出版、发表而取得的所得。  （四）特许权使用费所得，是指个人提供专利权、商标权、著作权、非专利技术以及其他特许权的使用权取得的所得；提供著作权的使用权取得的所得，不包括稿酬所得。  （五）经营所得，是指：  1.个体工商户从事生产、经营活动取得的所得，个人独资企业投资人、合伙企业的个人合伙人来源于境内注册的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生产、经营的所得；  2.个人依法从事办学、医疗、咨询以及其他有偿服务活动取得的所得；  3.个人对企业、事业单位承包经营、承租经营以及转包、转租取得的所得；  4.个人从事其他生产、经营活动取得的所得。  （六）利息、股息、红利所得，是指个人拥有债权、股权等而取得的利息、股息、红利所得。  （七）财产租赁所得，是指个人出租不动产、机器设备、车船以及其他财产取得的所得。  （八）财产转让所得，是指个人转让有价证券、股权、合伙企业中的财产份额、不动产、机器设备、车船以及其他财产取得的所得。  （九）偶然所得，是指个人得奖、中奖、中彩以及其他偶然性质的所得。  个人取得的所得，难以界定应纳税所得项目的，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确定。  第七条　对股票转让所得征收个人所得税的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并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案。  第八条　个人所得的形式，包括现金、实物、有价证券和其他形式的经济利益；所得为实物的，应当按照取得的凭证上所注明的价格计算应纳税所得额，无凭证的实物或者凭证上所注明的价格明显偏低的，参照市场价格核定应纳税所得额；所得为有价证券的，根据票面价格和市场价格核定应纳税所得额；所得为其他形式的经济利益的，参照市场价格核定应纳税所得额。  第九条　个人所得税法第四条第一款第二项所称国债利息，是指个人持有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发行的债券而取得的利息；所称国家发行的金融债券利息，是指个人持有经国务院批准发行的金融债券而取得的利息。  第十条　个人所得税法第四条第一款第三项所称按照国家统一规定发给的补贴、津贴，是指按照国务院规定发给的政府特殊津贴、院士津贴，以及国务院规定免予缴纳个人所得税的其他补贴、津贴。  第十一条　个人所得税法第四条第一款第四项所称福利费，是指根据国家有关规定，从企业、事业单位、国家机关、社会组织提留的福利费或者工会经费中支付给个人的生活补助费；所称救济金，是指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支付给个人的生活困难补助费。  第十二条　个人所得税法第四条第一款第八项所称依照有关法律规定应予免税的各国驻华使馆、领事馆的外交代表、领事官员和其他人员的所得，是指依照《中华人民共和国外交特权与豁免条例》和《中华人民共和国领事特权与豁免条例》规定免税的所得。  第十三条　个人所得税法第六条第一款第一项所称依法确定的其他扣除，包括个人缴付符合国家规定的企业年金、职业年金，个人购买符合国家规定的商业健康保险、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的支出，以及国务院规定可以扣除的其他项目。  专项扣除、专项附加扣除和依法确定的其他扣除，以居民个人一个纳税年度的应纳税所得额为限额；一个纳税年度扣除不完的，不结转以后年度扣除。  第十四条　个人所得税法第六条第一款第二项、第四项、第六项所称每次，分别按照下列方法确定：  （一）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属于一次性收入的，以取得该项收入为一次；属于同一项目连续性收入的，以一个月内取得的收入为一次。  （二）财产租赁所得，以一个月内取得的收入为一次。  （三）利息、股息、红利所得，以支付利息、股息、红利时取得的收入为一次。  （四）偶然所得，以每次取得该项收入为一次。  第十五条　个人所得税法第六条第一款第三项所称成本、费用，是指生产、经营活动中发生的各项直接支出和分配计入成本的间接费用以及销售费用、管理费用、财务费用；所称损失，是指生产、经营活动中发生的固定资产和存货的盘亏、毁损、报废损失，转让财产损失，坏账损失，自然灾害等不可抗力因素造成的损失以及其他损失。  取得经营所得的个人，没有综合所得的，计算其每一纳税年度的应纳税所得额时，应当减除费用6万元、专项扣除、专项附加扣除以及依法确定的其他扣除。专项附加扣除在办理汇算清缴时减除。  从事生产、经营活动，未提供完整、准确的纳税资料，不能正确计算应纳税所得额的，由主管税务机关核定应纳税所得额或者应纳税额。  第十六条　个人所得税法第六条第一款第五项规定的财产原值，按照下列方法确定：  （一）有价证券，为买入价以及买入时按照规定交纳的有关费用；  （二）建筑物，为建造费或者购进价格以及其他有关费用；  （三）土地使用权，为取得土地使用权所支付的金额、开发土地的费用以及其他有关费用；  （四）机器设备、车船，为购进价格、运输费、安装费以及其他有关费用。  其他财产，参照前款规定的方法确定财产原值。  纳税人未提供完整、准确的财产原值凭证，不能按照本条第一款规定的方法确定财产原值的，由主管税务机关核定财产原值。  个人所得税法第六条第一款第五项所称合理费用，是指卖出财产时按照规定支付的有关税费。  第十七条　财产转让所得，按照一次转让财产的收入额减除财产原值和合理费用后的余额计算纳税。  第十八条　两个以上的个人共同取得同一项目收入的，应当对每个人取得的收入分别按照个人所得税法的规定计算纳税。  第十九条　个人所得税法第六条第三款所称个人将其所得对教育、扶贫、济困等公益慈善事业进行捐赠，是指个人将其所得通过中国境内的公益性社会组织、国家机关向教育、扶贫、济困等公益慈善事业的捐赠；所称应纳税所得额，是指计算扣除捐赠额之前的应纳税所得额。  第二十条　居民个人从中国境内和境外取得的综合所得、经营所得，应当分别合并计算应纳税额；从中国境内和境外取得的其他所得，应当分别单独计算应纳税额。  第二十一条　个人所得税法第七条所称已在境外缴纳的个人所得税税额，是指居民个人来源于中国境外的所得，依照该所得来源国家（地区）的法律应当缴纳并且实际已经缴纳的所得税税额。  个人所得税法第七条所称纳税人境外所得依照本法规定计算的应纳税额，是居民个人抵免已在境外缴纳的综合所得、经营所得以及其他所得的所得税税额的限额（以下简称抵免限额）。除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另有规定外，来源于中国境外一个国家（地区）的综合所得抵免限额、经营所得抵免限额以及其他所得抵免限额之和，为来源于该国家（地区）所得的抵免限额。  居民个人在中国境外一个国家（地区）实际已经缴纳的个人所得税税额，低于依照前款规定计算出的来源于该国家（地区）所得的抵免限额的，应当在中国缴纳差额部分的税款；超过来源于该国家（地区）所得的抵免限额的，其超过部分不得在本纳税年度的应纳税额中抵免，但是可以在以后纳税年度来源于该国家（地区）所得的抵免限额的余额中补扣。补扣期限最长不得超过五年。  第二十二条　居民个人申请抵免已在境外缴纳的个人所得税税额，应当提供境外税务机关出具的税款所属年度的有关纳税凭证。  第二十三条　个人所得税法第八条第二款规定的利息，应当按照税款所属纳税申报期最后一日中国人民银行公布的与补税期间同期的人民币贷款基准利率计算，自税款纳税申报期满次日起至补缴税款期限届满之日止按日加收。纳税人在补缴税款期限届满前补缴税款的，利息加收至补缴税款之日。  第二十四条　扣缴义务人向个人支付应税款项时，应当依照个人所得税法规定预扣或者代扣税款，按时缴库，并专项记载备查。  前款所称支付，包括现金支付、汇拨支付、转账支付和以有价证券、实物以及其他形式的支付。  第二十五条　取得综合所得需要办理汇算清缴的情形包括：  （一）从两处以上取得综合所得，且综合所得年收入额减除专项扣除的余额超过6万元；  （二）取得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中一项或者多项所得，且综合所得年收入额减除专项扣除的余额超过6万元；  （三）纳税年度内预缴税额低于应纳税额；  （四）纳税人申请退税。  纳税人申请退税，应当提供其在中国境内开设的银行账户，并在汇算清缴地就地办理税款退库。  汇算清缴的具体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制定。  第二十六条　个人所得税法第十条第二款所称全员全额扣缴申报，是指扣缴义务人在代扣税款的次月十五日内，向主管税务机关报送其支付所得的所有个人的有关信息、支付所得数额、扣除事项和数额、扣缴税款的具体数额和总额以及其他相关涉税信息资料。  第二十七条　纳税人办理纳税申报的地点以及其他有关事项的具体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制定。  第二十八条　居民个人取得工资、薪金所得时，可以向扣缴义务人提供专项附加扣除有关信息，由扣缴义务人扣缴税款时减除专项附加扣除。纳税人同时从两处以上取得工资、薪金所得，并由扣缴义务人减除专项附加扣除的，对同一专项附加扣除项目，在一个纳税年度内只能选择从一处取得的所得中减除。  居民个人取得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应当在汇算清缴时向税务机关提供有关信息，减除专项附加扣除。  第二十九条　纳税人可以委托扣缴义务人或者其他单位和个人办理汇算清缴。  第三十条　扣缴义务人应当按照纳税人提供的信息计算办理扣缴申报，不得擅自更改纳税人提供的信息。  纳税人发现扣缴义务人提供或者扣缴申报的个人信息、所得、扣缴税款等与实际情况不符的，有权要求扣缴义务人修改。扣缴义务人拒绝修改的，纳税人应当报告税务机关，税务机关应当及时处理。  纳税人、扣缴义务人应当按照规定保存与专项附加扣除相关的资料。税务机关可以对纳税人提供的专项附加扣除信息进行抽查，具体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另行规定。税务机关发现纳税人提供虚假信息的，应当责令改正并通知扣缴义务人；情节严重的，有关部门应当依法予以处理，纳入信用信息系统并实施联合惩戒。  第三十一条　纳税人申请退税时提供的汇算清缴信息有错误的，税务机关应当告知其更正；纳税人更正的，税务机关应当及时办理退税。  扣缴义务人未将扣缴的税款解缴入库的，不影响纳税人按照规定申请退税，税务机关应当凭纳税人提供的有关资料办理退税。  第三十二条　所得为人民币以外货币的，按照办理纳税申报或者扣缴申报的上一月最后一日人民币汇率中间价，折合成人民币计算应纳税所得额。年度终了后办理汇算清缴的，对已经按月、按季或者按次预缴税款的人民币以外货币所得，不再重新折算；对应当补缴税款的所得部分，按照上一纳税年度最后一日人民币汇率中间价，折合成人民币计算应纳税所得额。  第三十三条　税务机关按照个人所得税法第十七条的规定付给扣缴义务人手续费，应当填开退还书；扣缴义务人凭退还书，按照国库管理有关规定办理退库手续。  第三十四条　个人所得税纳税申报表、扣缴个人所得税报告表和个人所得税完税凭证式样，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统一制定。  第三十五条　军队人员个人所得税征收事宜，按照有关规定执行。  第三十六条　本条例自2019年1月1日起施行。 |